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시행령

[제정 2003.6.25 대통령령 제180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 국·공립연구기관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력이 있을 것
  3. 학계·연구계·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 가공된 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운영이 가능할 것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조합의 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⑥ 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

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 (보증 등의 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따라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용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제10조 (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3조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8012호, 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